

## 부문2 : 돼지(豚)

### 제1조(보험목적의 범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계약에서 정한 돼지의 수용장소(소재지)에서 사육하는 아래의 돼지는 모두 보험의 목적으로 합니다.

1. 종모돈(種牡豚)
2. 종빈돈(種牝豚)
3. 비육돈(肥育豚)
4. 육성돈(후보돈 포함)
5. 자돈(仔豚)
6. 기타 돼지

### 제2조(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화재 및 풍재·수재·설해·지진**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목적이 폐사 또는 맥박, 호흡 그 외 일반증상이 수의학적으로 폐사가 확실시 되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회사는 방재 또는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손해는 사고발생 때부터 120시간(5일) 이내에 폐사되는 보험목적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고발생 때부터 120시간(5일) 이후에 폐사되어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일반조항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추가하여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땅 또는 계방 등의 붕괴로 생긴 손해. 다만, 붕괴가 이 약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위험으로 발생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2. 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먼지가 들어옴으로써 생긴 손해. 다만, 보험의 목적이 들어 있는 건물이 풍재·수재·설해·지진으로 직접 파손되어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추위, 서리, 얼음으로 생긴 손해

4.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장치 또는 설비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이 약관 제2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의 긴급피난 시 피난처에서 사료공급, 보호, 환기, 수의사의 검진, 소독 등 사고의 예방 및 손해의 경감을 위하여 당연하고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6. 모든 유산으로 인한 태아폐사 또는 성장저하로 인한 직·간접 손해
7. 보험목적이 도난 또는 행방불명된 경우

#### **제4조(손해액의 조사결정)**

- ①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에 회사가 정하는 [별표 4]의 "돼지 보험금 산정을 위한 보험가액 결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보험가액"이라 합니다)으로 합니다. 다만, 고기, 가죽 등 이용물 처분액 및 보상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액에서 이를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제1항의 이용물을 처리할 때에는 반드시 회사의 입회하에 처리하여야 하며 피보험자가 회사의 입회 없이 이용물을 임의 처분한 경우에는 회사가 인정 평가하여 손해액을 차감합니다.
- ③ 제1항의 보험가액 산정 시 보험목적물이 임신상태인 경우 임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합니다.
- ④ 이용물 처리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 **제5조(자기부담금)**

회사는 일반조항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비율을 곱한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합니다.

#### **제6조(잔존보험가입금액)**

회사가 이 약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 따라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에서 보상액을 뺀 잔액을 손해가 생긴 후의 나머지 보험기간에 대한 잔존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보험의 목적이 둘 이상일 경우에도 각각 동 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별표 4]

## 돼지 보험금 산정을 위한 보험가액 결정

### 1. 종모돈의 보험가액

종모돈은 종빈돈의 평가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20%를 가산한 금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 2. 종빈돈의 보험가액

종빈돈의 보험가액은 회사가 정하는 전국 도매시장 비육돈 평균지육단가(방박)에 의하여 아래 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다만, 임신, 분만 및 포유 등 종빈돈으로서 기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육돈의 산출방식과 같이 계산합니다.

- 종빈돈 보험가액 = 비육돈 지육단가의 범위에 해당하는 종빈돈 가격

비육돈 지육단가 (원/kg)	종빈돈 가격 (원/두당)	비육돈 지육단가 (원/kg)	종빈돈 가격 (원/두당)
1,949 이하	350,000	3,650 ~ 3,749	530,000
1,950 ~ 2,049	360,000	3,750 ~ 3,849	540,000
2,050 ~ 2,149	370,000	3,850 ~ 3,949	550,000
2,150 ~ 2,249	380,000	3,950 ~ 4,049	560,000
2,250 ~ 2,349	390,000	4,050 ~ 4,149	570,000
2,350 ~ 2,449	400,000	4,150 ~ 4,249	580,000
2,450 ~ 2,549	410,000	4,250 ~ 4,349	590,000
2,550 ~ 2,649	420,000	4,350 ~ 4,449	600,000
2,650 ~ 2,749	430,000	4,450 ~ 4,549	610,000
2,750 ~ 2,849	440,000	4,550 ~ 4,649	620,000
2,850 ~ 2,949	450,000	4,650 ~ 4,749	630,000
2,950 ~ 3,049	460,000	4,750 ~ 4,849	640,000
3,050 ~ 3,149	470,000	4,850 ~ 4,949	650,000
3,150 ~ 3,249	480,000	4,950 ~ 5,049	660,000
3,250 ~ 3,349	490,000	5,050 ~ 5,149	670,000
3,350 ~ 3,449	500,000	5,150 ~ 5,249	680,000
3,450 ~ 3,549	510,000	5,250 ~ 5,349	690,000
3,550 ~ 3,649	520,000	5,350 이상	700,000

5. 이 약관 제2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의 긴급피난 시 피난처에서 사료공급, 보호, 환기, 수의사의 검진, 소독 등 사고의 예방 및 손해의 경감을 위하여 당연하고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6. 성장저하, 산란을 저하로 인한 직·간접 손해
7. 보험목적이 도난 또는 행방불명된 경우

#### **제4조(손해액의 조사결정)**

- ①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에 회사가 정하는 [별표 5]의 "가금(家禽) 보험금 산정을 위한 보험가액 결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보험 가액"이라 합니다)으로 합니다. 다만, 고기, 가죽 등 이용물 처분액 및 보상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액에서 이를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제1항의 이용물을 처리할 때에는 반드시 회사의 입회하에 처리하여야 하며 피보험자가 회사의 입회 없이 이용물을 임의 처분한 경우에는 회사가 인정 평가하여 손해액을 차감합니다.
- ③ 이용물 처리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 **제5조(자기부담금)**

회사는 일반조항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비율을 곱한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합니다.

#### **제6조(잔존보험가입금액)**

회사가 이 약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 따라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에서 보상액을 뺀 잔액을 손해가 생긴 후의 나머지 보험기간에 대한 잔존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보험의 목적이 둘 이상일 경우에도 각각 동 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 부문7 : 축사(畜舍)

### 제1조(보험목적의 범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계약에서 정한 가축을 수용하는 건물 및 가축사육과 관련된 건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합니다.

1. 건물의 부속물 : 피보험자 소유인 찬막이, 대문, 담, 곳간 및 이와 비슷한 것
2. 건물의 부착물 : 피보험자 소유인 계시판, 네온싸인, 간판, 안테나, 선전탑 및 이와 비슷한 것
3. 건물의 부속설비 : 피보험자 소유인 전기·가스설비, 금·배수설비, 냉·난방설비, 금이기, 통풍설비 등 건물의 주 용도에 적합한 부대시설 및 이와 비슷한 것
4. 건물의 기계장치 : 착유기, 원유냉각기, 가금사의 기계류(케이지, 부화기, 분류기 등) 및 이와 비슷한 것

###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보험의 목적이 화재 및 풍재·수재·설해·지진으로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화재에 따른 손해
2.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
3.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조수(潮水), 우박, 지진, 분화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입은 손해
4. 설해에 따른 손해
5. 화재 또는 풍재·수재·설해·지진에 따른 피난손해(피난지에서 보험기간내의 5일 동안에 생긴 제1호 내지 제4호의 손해를 포함합니다)

② 제1항의 지진 피해의 경우 아래의 최저기준을 초과하는 손해를 담보합니다.

1. 기둥의 1개 이하를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보강하는 것
2. 보의 1개 이하를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보강하는 것
3. 지붕들의 1개 이하를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보강하는 것
4. 기둥, 보, 지붕들, 벽 등에 2m이하의 균열이 발생한 것

## 5. 지붕재의 2㎟ 이하를 수선하는 것

③ 제1항에서 보상하고 있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액의 10%를 한도로 보험의 목적에 대한 실제의 잔존물 제거비용을 제4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이 보험증권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제거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잔존물 제거비용】**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사고현장 및 인근 지역의 토양,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제거비용과 차에 실은 후 폐기물 처리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및 차에 실는 비용을 말합니다

##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일반조항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추가하여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화재 또는 풍재·수재·설해·지진 발생시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 보험의 목적이 발효,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그러나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풍재·수재·설해·지진과 관계없이 댐 또는 제방이 터지거나 무너져 생긴 손해
- 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먼지가 들어옴으로써 생긴 손해. 그러나 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이 풍재·수재·설해·지진으로 직접 파손되어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추위, 서리, 얼음으로 생긴 손해
-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화재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풍재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보험의 목적인 네온사인 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및 건식전구의 필라멘트 만에 생긴 손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 제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가 제2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과 같거나 클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그러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에는 보험 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작을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아래의 금액

$$\text{손해액} \times \frac{\text{보험가입금액}}{\text{보험가액의 } 80\% \text{ 해당액}}$$

② 동일한 계약의 보험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같은 경우 :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다른 경우 :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의 보험금}}{\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 이 보험계약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면서 보험계약자가 다른 계약으로 인하여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실제 그 다른 계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제1항에 따라 계산한 보험금을 그 다른 보험계약에 우선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지급 합니다.
- 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타인을 위한 보험에 해당하는 다른 계약의 보험계약자에게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다른 계약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초과한 손해액을 이 보험계약에서 보상합니다.

## 제5조(자기부담금)

회사는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풍재·수재·설해·지진으로 인한 손해일 경

우에는 제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1항 또는 제2항의 각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비율을 곱한 금액 또는 50만원 중 큰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합니다. 단,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화재로 인한 손해일 경우에는 제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1항 또는 제2항의 각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비율을 곱한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합니다.

## 제6조(손해방지의무)

회사는 일반조항 제10조(손해방지의무)에 추가하여 아래의 사항을 적용합니다.

- 회사는 보통약관의 일반조항 제10조(손해방지의무)의 손해방지 또는 경감에 소요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이하 "손해방지비용"이라 합니다)은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제4조(지급보험금의 계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 회사는 제4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의 지급보험금에 제1호의 손해방지비용을 합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지급합니다.

## 제7조(손해액의 조사결정)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장소에서의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합니다. 보험목적물의 경년감가율은 손해보험협회의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기준"을 준용하며, 이 보험목적물이 지속적인 개·보수가 이루어져 보험목적물의 가치증대가 인정된 경우 잔가율은 보온덮개·쇠파이프조인 축사구조물의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그 외 기타 구조물의 경우에는 최대 70%까지로 수정하여 보험가액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목적물이 손해를 입은 장소에서 6개월 이내 실제로 수리 또는 복구되지 않은 때에는 잔가율이 30%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30%로 수정하여 평가합니다.

## 제8조(잔존보험가입금액)

회사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 따라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에서 보상액을 뺀 잔액을 손해가 생긴 후의 나머지 보험기간에 대한 잔존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보험의 목적이 둘 이상일 경우에도 각각 동 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